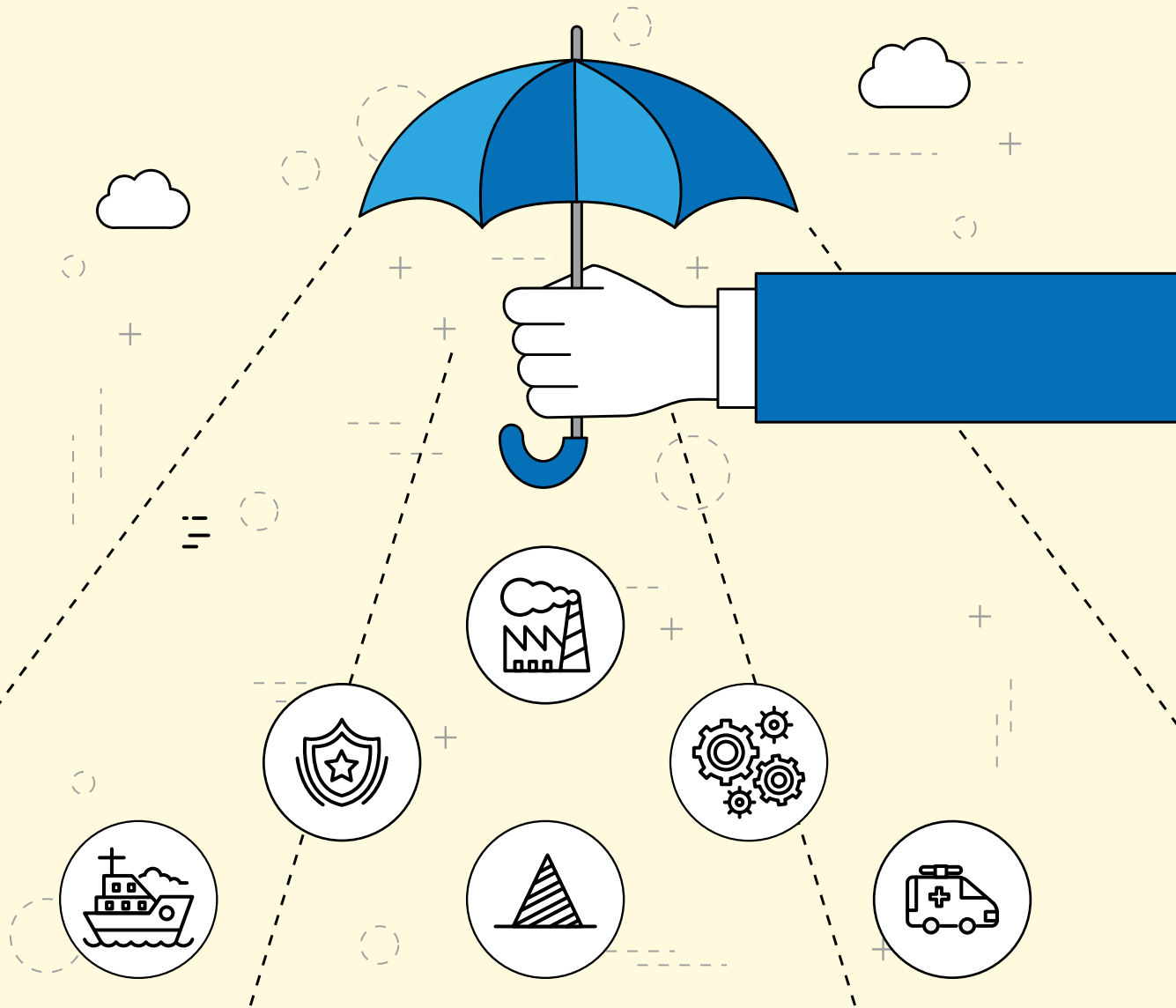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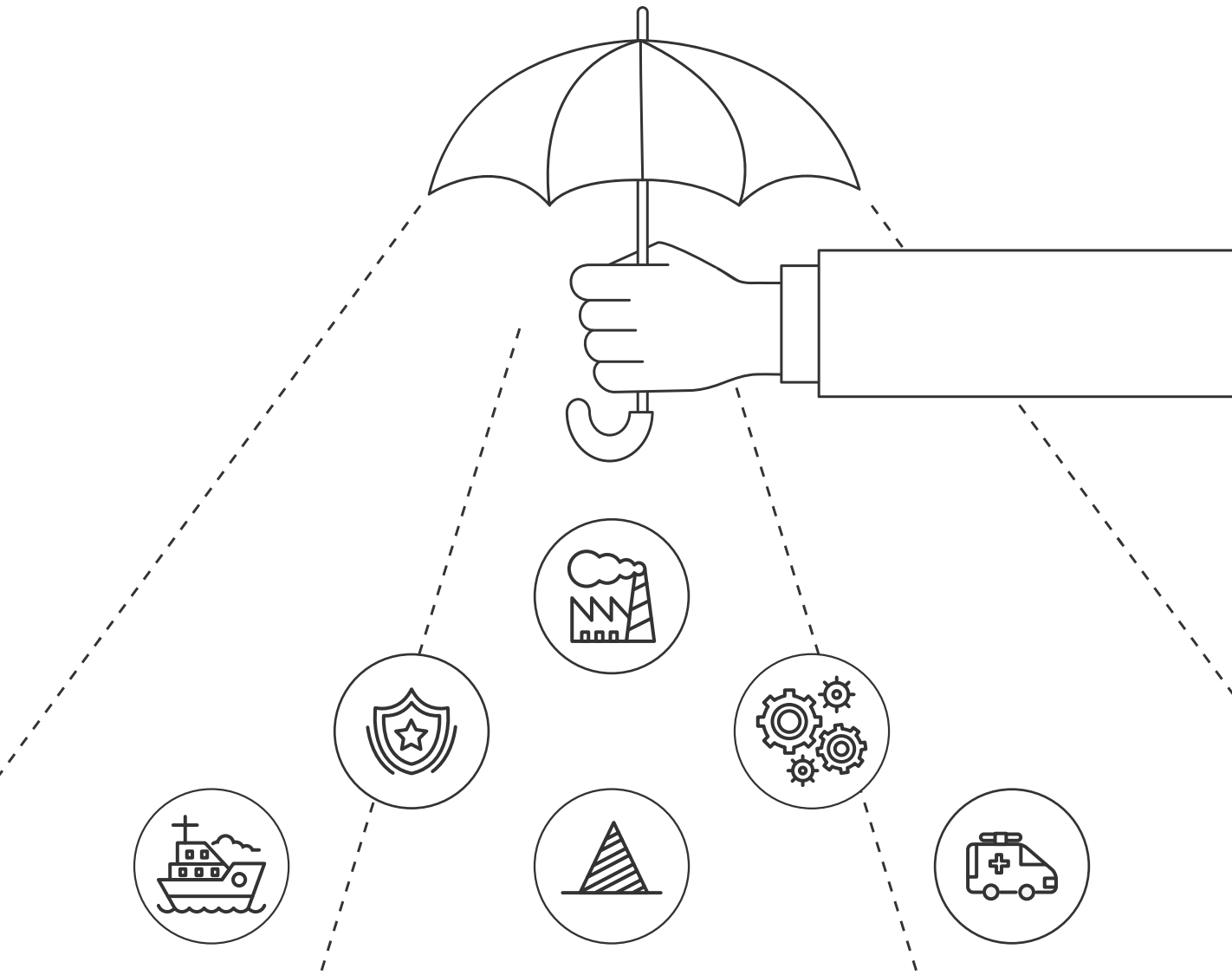


2017 국민안전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7 국민안전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7 국민안전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CONTENTS

안전정책 분야

① 쉽고 빨라진 긴급신고 통합서비스	10
②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확대 제공	11
③ 국민 안전교육 강화	12
④ 소방헬기, 안전체험관 건립 지원	13
⑤ 유·도선 비상상황 대비훈련 의무화	14
⑥ 다중이용 건물 내 민방위 경보전파 의무화	15
⑦ 국민 실생활과 부합하는 민방위훈련	16
⑧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17
⑨ 안전관리체계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	18
⑩ 재난안전사업 평가제도 시행	19

재난관리 분야

① 지진방재 종합 개선대책	22
② 풍수해 보험료 인하	25
③ 재난관리평가체계 기반 강화	26
④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도입	28
⑤ 재난관리자원 모듈화 추진	30



분야별

소방안전 분야

① 소방공무원 공채 응시연령 하향	34
②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제도 개선	35
③ 일반주택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36
④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38
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39
⑥ 소방차 출동 목표시간 관리제	40
⑦ 중앙119 구급상황관리센터 신설	41
⑧ 대형 재난현장 국가헬기 통합 대응체계 강화	42
⑨ 소방용품 제품검사 수수료 완화	43

해양경비안전 분야

① 수상구조사 자격제도	46
② 국민편의를 위한 조종면허 PC시험장 증설	47
③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수수료 현실화	48
④ 연안체험활동 신고기관 변경	49
⑤ 연안해역 통화품질 향상	50
⑥ 국내 최초 화학방제정 도입	51
⑦ 해상교통 관제시스템 확대 설치	52

2017 국민안전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CONTENTS

1월부터

① 쉽고 빨라진 긴급신고 통합서비스	10
②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확대 제공	11
③ 소방헬기, 안전체험관 건립 지원	13
④ 다중이용 건물 내 민방위 경보전파 의무화	15
⑤ 안전관리체계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	18
⑥ 지진방재 종합 개선대책	22
⑦ 풍수해 보험료 인하	25
⑧ 재난관리평가체계 기반 강화	26
⑨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도입	28
⑩ 소방공무원 공채 응시연령 하향	34
⑪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제도 개선	35
⑫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38

⑬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39
⑭ 소방차 출동 목표시간 관리제	40
⑮ 소방용품 제품검사 수수료 완화	43
⑯ 연안해역 통화품질 향상	50

2월부터

①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17
② 일반주택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36



시기별

3월부터

- ① 국민 실생활과 부합하는 민방위훈련 16
- ② 수상구조사 자격제도 46

4월부터

- ① 재난안전사업 평가제도 시행 19
- ② 재난관리자원 모듈화 추진 30
- ③ 중앙119 구급상황관리센터 신설 41
- ④ 대형 재난현장 국가헬기 통합 대응체계 강화 42
- ⑤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수수료 현실화 48

5월부터

- ① 국민 안전교육 강화 12

6월부터 (상반기 중)

- ① 연안체험활동 신고기관 변경 49

7월부터

- ① 유·도선 비상상황 대비훈련 의무화 14

9월부터

- ① 국민편의를 위한 조종면허 PC시험장 증설 47

12월부터

- ① 국내 최초 화학방제정 도입 51
- ② 해상교통 관제시스템 확대 설치 52

2017 국민안전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CONTENTS

재난안전 총괄·조정 기능 강화

①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17
② 안전관리체계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	18
③ 재난안전사업 평가제도 시행	19
④ 지진방재 종합 개선대책	22
⑤ 재난관리평가체계 기반 강화	26

재난 안전관리 역량 향상 (시험·자격·교육·훈련)

① 국민 안전교육 강화	12
② 유·도선 비상상황 대비훈련 의무화	14
③ 국민 실생활과 부합하는 민방위훈련	16
④ 소방공무원 공채 응시연령 하향	34
⑤ 수상구조사 자격제도	46

안전관련 기준·의무 강화

① 다중이용 건물 내 민방위 경보전파 의무화	15
②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도입	28
③ 일반주택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36
④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38
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39
⑥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수수료 현실화	48



현장대응 역량 확충

① 소방헬기, 안전체험관 건립 지원	13
② 재난관리자원 모듈화 추진	30
③ 소방차 출동 목표시간 관리제	40
④ 중앙119 구급상황관리센터 신설	41
⑤ 대형 재난현장 국가헬기 통합 대응체계 강화	42
⑥ 국내 최초 화학방제정 도입	51
⑦ 해상교통 관제시스템 확대 설치	52

재난안전 관련 국민편의 증진

① 쉽고 빨라진 긴급신고 통합서비스	10
②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확대 제공	11
③ 풍수해 보험료 인하	25
④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제도 개선	35
⑤ 소방용품 제품검사 수수료 완화	43
⑥ 국민편의를 위한 조종면허 PC시험장 증설	47
⑦ 연안해역 통화품질 향상	50
④ 연안체험활동 신고기관 변경	49

2017 국민안전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전정책 분야

- ① 쉽고 빨라진 긴급신고 통합서비스
- ②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확대 제공
- ③ 국민 안전교육 강화
- ④ 소방헬기, 안전체험관 건립 지원
- ⑤ 유·도선 비상상황 대비훈련 의무화
- ⑥ 다중이용 건물 내 민방위 경보전파 의무화
- ⑦ 국민 실생활과 부합하는 민방위훈련
- ⑧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 ⑨ 안전관리체계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
- ⑩ 재난안전사업 평가제도 시행

1

쉽고 빨라진 긴급신고 통합서비스 개시



21개에 달하는 신고전화번호가 119(재난), 112(범죄), 110(민원상담) 3개로 통합되어, 골든타임 확보 및 국민 신고편의가 제고됩니다.

이전

- 21개 안전관련 신고전화 난립으로 긴급상황 발생 시 국민 혼동 발생
- 119, 112로 걸려온 많은 비긴급 전화로 긴급상황 시 대응력 저하

변경

- 119(재난), 112(범죄), 110(민원상담) 3개 번호로 통합하여 국민의 신고 편의를 제고하고, 긴급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
- 비긴급 민원상담은 110으로 분리하여 민원상담 통합접수 및 긴급기관의 대응력 강화

21개 국민 안전 관련 신고전화를 119(재난), 112(범죄), 110(민원상담) 등 3개 번호로 통합하는 긴급신고 통합서비스가 '16.10.28부터 전면 개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이제 복잡한 신고전화 번호를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119, 112, 110 3개 번호 중 어느 하나로만 전화하면 긴급신고 또는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21개 신고전화 번호도 병행 운영

119와 112에 걸려오는 비긴급 상담전화나 장난전화는 긴급출동 대응시간이 늦어지는 원인이 되어, 자칫 생명을 구하는 데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 바로 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전화는 110으로 걸어주세요.

2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확대 제공



생활 속 궁금한 우리 동네 안전정보를 쉽게 지도로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 '생활안전지도'의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이전

- 생활안전지도 : 8대분야 **227종**
 - 실시간 정보 제공(5종)
 - 교통돌발정보, 미세먼지, 오존, 통합환경지수, 방사능측정감시망
- ※ 인터넷 웹에서 제공(앱은 일부 제공)



변경(2017년)

- 서비스 확대 : 8대분야 **240종**
 - 해양오염, 위험물 적재항구지역, 전국 지진대피소 현황 등 추가
 - 실시간 정보 확대(10종)
 - 초미세먼지, 자외선지수, 이산화 질소, 식중독지수, 동파가능지수
- ※ 인터넷 웹과 스마트폰 앱으로 동시제공

➤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는 2016년 1월 1일부터 227종의 주제도를 공개하였으며, 2017년 1월부터는 13종을 확대하여 총 240종의 주제도를 서비스 합니다.

- 특히, 전국의 지진대피소 정보 약 5,532개소를 생활안전지도를 통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도 위에 서비스 합니다.



※ 인터넷(www.safemap.go.kr) 접속 또는 모바일에서 '생활안전지도' 앱을 다운로드

➤ 현재 제공 중인 교통돌발정보, 미세먼지, 오존, 통합환경지수, 방사능측정망 등 5종의 실시간 정보와 함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초미세먼지, 자외선지수, 이산화질소를 확대 제공합니다.

- 또한, 식중독 지수와 동파가능지수 등 계절별 맞춤형 정보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확대 제공

사고·재난 발생시 국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양질의 안전교육 실시를 위한 안전교육 인프라체계를 구축합니다.



이전

- 개별법에 따라 특정 대상·직무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전국민 대상 안전교육 미비
- 안전교육 기관·강사 등이 산재하여 있으나 법적 규정이 미비하여 체계적 정립 및 관리에 애로



변경(2017년 5월)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마련을 통해 일반 국민대상 체계적 안전교육제도 마련
- 국민안전교육 법적 기반 마련
 - 국민안전교육기관 지정
 - 국민안전 전문자격제도 신설
 -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포털 구축 등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을 마련하였습니다.

- 국민안전처가 총괄하여 국민안전기본계획(5년) 수립하고,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이행결과를 점검·평가합니다.

➤ 기존에는 민간관련단체 등에서 안전관련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증(500여개) 등록을 통해 검증·관리되지 않은 안전교육과정 등이 운영되었으나,

➤ 통일되고 균형잡힌 양질의 국민대상 안전교육 실시를 위하여 안전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전문자격제도를 운영하고,

- 이를 양성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맞춤형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등의 시책을 추진합니다.

4

소방헬기, 안전체험관 건립에 소방안전교부세 지원



노후 소방헬기 교체와 안전체험관의 건립 등 대규모 소방·안전 사업에 소방안전교부세가 지원됩니다.

이전

-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에 따라 시·도별로 교부하여 대규모 소방·안전사업은 추진 어려움



변경(2017년)

- 소방헬기, 안전체험관 등 대규모 소방·안전사업에 소방안전교부세를 별도로 지원

➤ 20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소방헬기 구입과 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가 지원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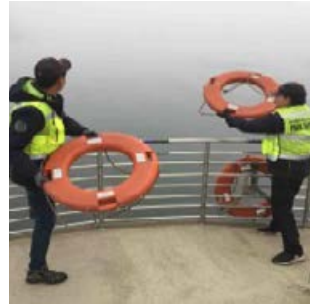
- 강원과 제주를 비롯하여 2023년까지 총 10대의 소방헬기 구입사업에 총 1,075억원(시·도별 최대 115억원)을 지원하고,
- 2020년까지 8개 시·도의 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해 총 680억원(시·도별 최대 100억원)을 지원합니다.

소방헬기 구입 및 안전체험관 건립 지원계획

- 소방헬기
 - 지원기준 : 기준금액(230억원)의 50%내에서 실제 사업비용의 50%를 일괄 또는 분할 지원
 - 지원 시도 : ('17) 강원, 제주 ('18~'23) 서울, 부산2, 대구, 전남, 전북, 광주, 인천
- 안전체험관
 - 지원기준 : 기준금액(대형·특성화 200억원, 중형 120억원)의 50%내에서 실제 사업비용의 50%를 분할 지원
 - 지원 시도 : ('17~'19) 울산, 경기, 경남, 제주 ('18~'20) 서울, 인천, 광주, 충북

5

유·도선 비상상황 대비훈련 의무화 등 안전관리 강화



‘17년부터 유·도선에 승선하는 선원 및 기타 종사자 등에 대한 비상상황 대비훈련이 의무화 되는 등 유·도선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이전

- 유·도선에 승선하는 선원 및 기타 종사자 등에 대한 **훈련 의무화 규정 없음**
- 사업자·기타 종사자 등 연간 **4시간** 이내 교육의무화
-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기준 없음**(사망시 1인당 1억보상 권고)

변경(2017년 7월 19일)

- 선내숙지훈련 등 5개 유형에 대해 **매월 또는 6개월 주기로 훈련실시 의무화**
- 사업자·기타 종사자 등 연간 **8시간** 이내로 교육 의무화
-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을 **사망시 1인당 1억5천만원 이상 가입토록 의무화**



➤ 국민안전처에서는 유·도선에 승선하는 선원·기타 종사자 등에 대하여 비상상황 대비훈련을 의무화(5개 유형, 주기별*) 실시하여 유·도선 사고발생 시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매월) 선내숙지, 퇴선, 기름유출·소화, (6개월) 인명구조·추락·좌초, 침수

➤ 또한, 유·도선 사업자·선원 등의 안전교육 이수시간을 연간 4시간 이내에서 8시간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금액을 사망시 1인당 1억5천만원 이상으로 가입토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6

다중이용 건물 내 민방위 경보전파 의무화

민방위경보 의무대상 적용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민방위경보를 의무적으로 전파해야 합니다.



이전

- 다중이용 건물 내 **민방위 경보전파 미비**
 - 민방위 사태시 방송(라디오, TV자막)과 옥외 경보단말(사이렌) 이용



변경(2017년 1월 28일)

- 다중이용 건물 내 관리주체 **민방위 경보전파 의무화**
 - ※ 대상 : 운수시설, 백화점, 영화관 등

➤ 올해부터 백화점, 영화관 등 다중이용 건물 관리주체는 건물 내에 민방위경보를 전파하여야 합니다.

-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운수시설 및 3천㎡ 이상인 대규모 점포, 7개 이상의 영화상영관 등에 민방위 경보방송을 전파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민방위기본법 공포('16.1.27)



➤ 이에 따라, 1월 28일부터 자치단체에서는 민방위 사태가 발생할 경우 민방위경보 의무대상 관리주체에게 민방위경보를 전달하고, 관리주체는 건물 내 이용객에게 경보상황을 전파하게 됩니다.

7

국민 실생활과 부합하는 민방위훈련 실시



안보 및 재난여건을 반영한 특성화 훈련에 실제 주민·대원이 참여하여 비상시 국민 행동요령을 숙달하게 됩니다.

이전

- 민방공 위주 대피훈련
- 전국단위 **불특정 일반국민** 훈련



변경(2017년)

- 핵 대피, 지진대피훈련 등 **특성화 훈련**
- 소집단 단위 **특정타깃** 대상
 - 다중이용업소 중점 대피훈련 ('17년 훈련대상 : 백화점)

➤ 그간 민방위 훈련이 전국단위 민방공 대피위주 훈련으로 진행되어 국민 참여가 저조하는 등 훈련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어,

- 2017년부터는 북 핵위협 등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지진 등 취약재난에 대비하여 국민 실생활에 부합한 특성화 훈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전국적으로 **핵 대비 민방공 대피훈련과 지진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소집단 단위로 다중이용업소 **특성과 유형에 맞는 대피훈련**을 주민과 대원이 참여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2017년 민방위 훈련계획

민방공 대피훈련
3회
전국단위 1회(8월),
시도단위 2회(6월, 11월)

지진대피훈련
2회
시군구단위 2회(4월, 10월)

재난대비훈련
3회
전국단위 1회(5월),
시군구단위 2회(3월, 9월)

8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안전취약 민간시설 집중 점검 등-

정부·지자체·국민 등이 모두 참여하여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실태를 다양한 방법으로 점검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생활 속 안전문화를 확산합니다.



이전

- 2.16~4.30(76일), 약 49만개소
- 안전사각지대 집중 점검
- 안전신문고를 통한 국민 참여
- 보수·보강 투자수요 발굴 중점



변경(2017년부터)

- 2.6~3.31(54일), 약 33만개소
- 안전취약 민간시설 집중 점검
- 안전신고 국민운동 붐 조성
- 안전산업 육성관련 특수시책 추진

➤ 국가안전대진단 시행 3년차를 맞아 2017년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안전점검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간과 진단대상 규모를 조정하였습니다.

➤ 안전수칙 미준수 등으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안전관리가 취약한 민간시설 등 위험시설*(7만개소)에 대해서는

- 민관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안전규정 준수 여부, 안전관리체계 등을 중점 점검하고
- 일반시설(26만개소)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자체점검을 실시합니다.

* 건설현장, 전통시장, 화재취약지구, 유어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참여 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특수시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 활성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안전분야 확대 등

9

안전관리체계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



정부합동점검단은 2017 국가안전대진단 방향에 맞춰 지하철, 여객선, 공동주택 등 교통·주거 시설을 중점으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전

- 영화관, 백화점 등 10개 분야 **다중이용시설** 위주 안전점검
- **국민안전처 중심**으로 정부합동안전점검단 구성
-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된 **공공시설 위주**의 안전점검 실시



변경(2017년)

- 지하철, 공동주택 등 11개 분야 **교통·주거시설 위주** 안전점검
- 지자체 상설안전점검단 신설 등 **지자체 중심** 점검체계로 전환
- 안전관리가 취약한 **민간시설 위주**의 안전점검 실시

➤ 사고위험이 높은 지하철, 여객선, 공동주택 등 교통·주거시설 위주로 안전관리체계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특히, 안전관리가 취약한 민간시설 중심으로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중점추진과 연계하여 점검의 효율성을 높ی겠습니다.

※ 점검대상 : 지하철, 댐, 여객선, 유원시설, 버스, 공동주택, 항공기, 지하상가, 초고층빌딩, 초등학교 등

➤ 외부전문가 참여확대로 점검의 전문성을 높여 사회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는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 점검결과에 따라 제도개선, 이행실태 확인 등 대책강구를 통해 재해와 인명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국건설에 기여하겠습니다.

정부 재난안전사업 평가제도 시행



정부의 각종 재난안전사업에 대해 국민안전처가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과정에 환류합니다.

이전

- 재난안전사업 평가기반 마련
 - 재난안전사업 성과목표·지표 수립
 - 재난안전사업 시범평가 실시



변경 (2017년 4월)

- 재난안전사업 평가 실시
 - 2016년도 사업 305개 대상
-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다음연도 재난안전예산에 반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14.12.30)에 따라 정부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해 효율성·효과성 평가제도가 도입됩니다.

- '16년에는 본격적인 평가에 앞서 일부사업에 대해 시범평가*를 실시하였으며,

* 평가자문위원회, 한국행정연구원 등 외부전문가 참여하여 82개 사업 평가

- '17년부터는 국민안전처에서 정부 재난안전사업 전반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 '16년도 사업에 대해서 성과목표·지표 등 사전 확정('15.12월)

➤ 관계부처에서는 예산요구 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국민안전처는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를 통해 이를 확인·점검하고 다음연도 재난안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투자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제도

- 국민안전처에서 정부 재난안전사업에 대한 투자방향, 투자 우선순위 의견 등을 예산편성 전에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에서 재난안전예산을 편성토록 하는 제도

2017 국민안전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재난관리 분야

- ① 지진방재 종합 개선대책
- ② 풍수해 보험료 인하
- ③ 재난관리평가체계 기반 강화
- ④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도입
- ⑤ 재난관리자원 모듈화 추진

1

지진방재 종합 개선 대책



국민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내진대상 확대와 내진보강 강화, 지진연구 및 민관협력 확대 등 종합적인 지진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전

- 지진 조기경보 체계 **이원화**
- 지진대피소 **미지정**
- 재난지원금 **미지급**
- 비정기적, 책자위주 교육·훈련
- 내진설계
- 3층 또는 500㎡ 이상
- 부처별 지진연구
- 지진방재 **전문인력 확보 미흡**



변경 (2017년)

- 지진조기경보 **기상청으로 일원화**
- 지진대피소 **지정**
- 재난지원금 **100만원**
- 국민 안전교육 강화(컨텐츠, 대상 등)
- 내진설계
- 모든 주택, 2층 또는 200㎡ 이상
- 지진연구에 **부처 공동사업단** 운영
- 지진방재 **전문인력 단계적 양성**

➤ 국민안전처는 9.12 지진을 계기로 민관합동 「지진방재 종합개선 기획단을 구성, 기존의 대책을 원점에서 재점검하여 지진 조기 경보, 지진연구 확대 등 4대 목표 10개 분야 109개 과제로 구성된 「지진방재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 하반기부터는 지진관측망이 확대되고, 지진 또는 지진해일 발생시 기상청에서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한 전용 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에게 직접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므로 문자 발송시간이 단축됩니다.

지진 조기경보 개선

현행	이원화(조기경보[기상청] - 송출[안전처])	지진 재난문자 → 관측망 확대 → 경보시간 단축	개선	기상청 일원화('16년 11월 완료)
	2020년까지(206>314개소)			2018년까지 조기완료
	50초 이내			25초 이내(2018년까지)

1

지진방재 종합 개선 대책

둘째, 지진 대피소는 일시 대피형인 옥외대피소(5,532개소) 및 장기 대피형인 지진실내구호소*(1,536개소)를 신규 지정('16.12월) 하고, 온라인을 통한 지진대피소 홍보**가 강화됩니다.

* 기존의 임시주거시설 중 내진이 적용된 시설물

** 민간공간정보서비스(다음, 카카오내비, T-map 등)와 국민안전처, 안전디딤돌 및 지자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 추진

셋째, 국민 안전교육이 강화됩니다. 생애주기별 지진안전교육, 전국단위 국민참여훈련 및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안전교육 강화

현행 - 책자위주 교육홍보 - 비정기적인 대피훈련 위주	국민행동요령 대국민 교육훈련	개선	-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 (장소상황별 내용 구체화)
			- 학생 등 생애주기별 지진안전교육 강화 - 연 3회 이상 전국단위 국민참여훈련 실시

넷째, 신규 건물의 내진설계 대상이 확대되고, 기존 건물의 내진보강이 강화됩니다. 내진설계는 현행 3층 또는 500㎡ 이상 에서 모든 주택, 병원, 학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단계적 확대 방안



1

지진방재 종합 개선 대책

➤ 또한,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을 확대 실시하고, 철도 등 주요 SOC 시설*은 2019년까지 보강을 완료하는 한편, 민간시설은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통해 내진보강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국도교량 : '20→'18년, 일반철도 : '20→'19년, 공항건축물 : '20→'18년

** 법인세·소득세 최대 7%, 취득세·재산세 50% , 보험료 30% 감면

➤ 다섯째, 단층조사는 동남권 지역은 2020년까지 완료하고, 단계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확대하며, 지진방재 특화대학*을 선정·지원하는 등 기초연구도 체계적으로 추진합니다.

* '17년 5개 대학, 대학별 3억원

➤ 마지막으로, 지진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뉴얼을 전면 개선하는 한편, 조직·예산 및 전문인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인력·예산 확보

현행	지진방재인력 부족	→	개선
	'16년 1,163억		
		→	
		→	예산 '17년 3,669억(전년대비 215% 증)

2

풍수해 보험료 인하로 주민부담 감소



풍수해 보험료 지자체 추가 지원 확대와 보험료율이 경감됩니다.

이전

- 지방비 추가지원 대상
 - 2016년 **130개** 시·군·구 시행
- 2016년 평균 보험료
 - 주택 : 46,100원(정액형)
 - 주택 : 163,200원(공동주택실손형)
 - 온실 : 320,400원



변경 (2017년)

- 지방비 추가지원 대상
 - 17.1.1부터 **전국 지자체** 확대 실시 권고
- 2017년 평균 보험료 경감
 - 주택 : 39,200원(정액형)
 - 주택 : 122,400원(공동주택실손형)
 - 온실 : 290,000원

➤ 2017년 1월 1일부터는 주민들의 풍수해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하여 보험료에 대한 지방비 추가 지원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 실시(권고) 됩니다.

* ('16.10월말 기준) 130개 시군구 → ('17년 전국 확대 실시 권고)

➤ 아울러 최근 몇 년간 자연재난이 감소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요율이 조정(하락)되었고, 그 결과 주민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예정입니다.

* 풍수해보험 요율 인하 → 보험료 절감 : 주민보험료 부담 경감

구분	보험료 절감 예시('16년 → '17년)
주택(정액형)	46,100원 → 39,000원(7,100원, 15.3%인하)
주택(공동주택 실손형)	163,200원 → 122,400원(30,800원, 25.0%인하)
온실	320,400원 → 290,000원(30,400원, 9.5%인하)

3

재난관리평가체계 기반 강화

재난관리평가를 통하여 더 많은 기관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17년도에는 평가 대상기관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이에 맞춰 평가 운영기반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전

- 재난관리평가 대상기관 (중앙 13개, 공공 23개)
- 일부 현지평가 대상 기관만 언론공개, 등급만 기관에 통보
- 국정평가와 결과 미연계



변경 (2017년 1월)

- 재난관리평가 대상기관 확대 (중앙 19개, 공공 55개)
- 평가결과 **쏠기관 등급 언론공개 및 기관별 역량분석결과 통보**
- 공공기관 평가결과를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 금년도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능 사고), 외교부(해외 재난) 등 재난관리주관기관 전체로 대상기관을 확대하였고,

- 2018년도까지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을 작성하는 기관전체에 대하여 재난관리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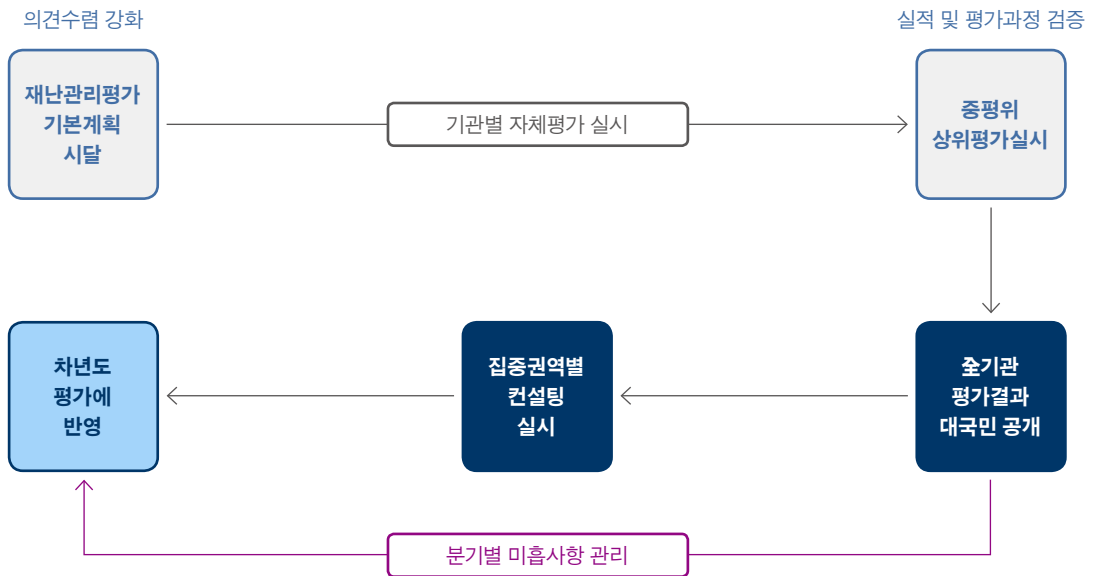


3

재난관리평가체계 기반 강화

-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철도, 도로·교통·항만, 에너지, 안전관리로 기관을 그룹화 하였으며
 - 평가·환류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국정평가와 연계 운영됩니다.
- 재난관리평가를 받는 모든 기관의 재난관리 역량 수준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언론을 통하여 대국민 공개합니다.

재난관리평가 흐름도



4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도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대



재난이 발생하면 큰 피해가 우려되는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숙박시설, 주유소, 장례식장 등도 보험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이전

-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

2층 이상 음식점, 16층이상 아파트, 학교, 병원, 백화점, 등 특수건물,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PC방, 다중이용업소 등



변경 (2017년 1월 8일)

- 보험의무 가입대상 확대

추가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숙박시설, 주유소, 장례식장 등 19종 시설

➤ 지금까지 의무보험은 사회적 이슈가 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후에 개별적으로 도입되어 일부 재난취약시설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 2017년 1월 8일부터(기존 운영시설은 7월 7일까지)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19종 시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번에 도입되는 의무보험의 대인 보상금액은 자동차배상보험과 같이 '1인당 1억5천만원, 사고당 무한', 대물 보상금액은 10억원으로 정하여 피해자 보상을 강화하였고, 특히 가입자의 과실여부와 무관하게 보상하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아울러,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도입확대에 따라 시설의 관리·점유·소유자는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배상능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용객은 안심하고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4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도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변경(추가) 내용

구분	기존	변경(추가)
대상시설	학교, 병원, 백화점, 16층 이상 아파트 등 특수건물과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PC방, 2층 이상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 등	주유소, 장례식장,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숙박시설,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상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보상하는 손해	(특수건물) 화재로 인한 제3자 신체 피해 (다중이용업소) 화재·폭발로 인한 제3자 신체 및 재산 피해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 및 재산 피해
보상한도	(특수건물) 대인 8천만원 (다중이용업소) 대인 1억원, 대물 1억원	대인 1억5천만원, 대물 10억원
제재수단	(특수건물) 미가입시 500만원 이하 벌금 (다중이용업소) 미가입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미가입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5

재난관리자원 모듈화 추진을 통한 자원관리체계 개선

신속한 재난수습을 위한 공통자원·유형별자원의 모듈화 추진을 통해 자원관리체계를 개선합니다.



이전

- 자재, 장비, 인력 등 재난관리 자원의 **협업기능별** 분류
⇒ 특정 재난 발생 시 필요자원을 신속하게 파악하는데 한계 발생
- 재난관리책임기관 보유자원 실태점검 연 2회(상/하반기) 실시



변경 (2017년 4월)

- **재난유형별** 공통자원을 모듈화* 및 유사재난 간 상호공유 활용
⇒ 대규모 재난시 신속한 자원동원 가능
* 31개 유사재난간 공통자원 그룹화
- 재난관리책임기관 보유자원 실태점검 확대 및 강화
 - (점검)정기(2회), 수시(각종 훈련), 불시점검 등
 - (정비)자원전수조사(연 1회)자원현행화 정비(월 1회)

➤ 재난관리자원이란 각종 재난으로부터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자원으로써, 자재·장비·인력 등을 의미합니다.

➤ 현재 재난관리자원은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이 비축·관리하며

-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관리시스템을 구축(진행중)하여 응급복구나 의료방역, 환경정비 등 협업기능별로 자원을 분류·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재난관리자원 모듈화는 재난발생 시에 필요자원을 적기(適期)에 투입·지원하기 위해서 재난유형별로 자원을 분류·관리함으로써,

- 각 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유사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자원을 공동 활용하게 되어 신속한 재난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재난관리자원 모듈화 추진을 통한 자원관리체계 개선

- 이와 더불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보유자원 운영관리 실태에 대한 정기점검·평가(연 2회), 수시점검(각종 훈련), 불시점검(안전감찰관)을 실시하고,
- 매월 1회 현행화의 날(13일)을 지정·운영하여 상시적·실제적으로 응원·활용이 가능하도록 주기적으로 정비와 점검을 하겠습니다.



2017 국민안전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소방안전 분야

- ① 소방공무원 공채 응시연령 하향
- ②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제도 개선
- ③ 일반주택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④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 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 ⑥ 소방차 출동 목표시간 관리제
- ⑦ 중앙119 구급상황관리센터 신설
- ⑧ 대형 재난현장 국가헬기 통합 대응체계 강화
- ⑨ 소방용품 제품검사 수수료 완화

1

소방공무원 공채 응시연령 하향



소방공무원 공개채용(소방사·지방소방사) 응시가능최저연령이 21세에서 18세로 하향됩니다.

이전

-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연령
- 21세이상 40세이하



변경(2017년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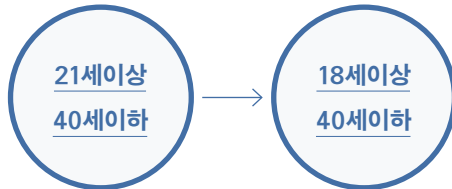
-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연령
- 18세이상 40세이하

➤ 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

➤ 1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 공개채용(소방사·지방소방사) 응시연령을 21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합니다.

※ (경찰공무원-순경)18세이상 40세이하, (일반직-8급이하)18세이상



2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 확대와 시험과목·방식 개선



현장안전교육의 중요성과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제도가 개편됩니다.

이전

- 응시자격
 -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 교원
 - 소방공무원
 - 학과 구분 및 필수 이수과목 지정
 - ※ 기타 안전관리 유사경력 : 응시자격 미부여
-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1차) 소방학개론, 구급·응급처치론, 재난관리론
 - (2차) 교육학개론, 심리학개론
 - (3차) 인·적성,교육관,전문지식,가능성 등



변경(2017년 1월 28일)

- 응시자격
 - 유치원 교사 포함 등 범위 확대
 -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경력자 포함
 - 학과 구분없이 동일한 지정 과목 이수자
 - ※ 기타 안전관리 유사경력 : 응시자격 부여
- 시험과목 및 시험방식
 - (1차) 소방학개론, 구급·응급처치론, 재난관리론, 교육학개론 (3과목 선택)
 - (2차) 국민안전교육실무(논술형)
 - (3차) 폐지

➤ 「소방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이 확대되고 시험방식이 개편됩니다.

확대된 응시자격

- 유치원교사,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경력 3년 이상)
- 소방공무원(경력 3년 이상), 의용소방대원(경력 5년 이상)
- 학과 구분 없이 소방안전교육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안전직무 기술사, 시설관리사,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 안전직무 기사, 1급 응급구조사, 간호사, 1급 소방안전관리자(경력 1년 이상)
- 안전직무 산업기사, 2급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2급 소방안전관리자(경력 3년 이상)

3

일반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일반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합니다.



이전

- 2012년 2월 5일부터 새로 건축되는 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중
- 2012년 2월 4일 이전에 지어진 주택에 대하여는 2017년 2월 4일까지 5년간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규정 적용을 유예



변경(2017년 2월 5일)

-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규정 적용

➤ 2017년 2월 5일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최근 3년('13년~'15년) 전체 화재 사망자 중 절반이 주택(아파트 제외)에서 발생

설치대상: 단독주택(단독·다가구) 및 공동주택(다세대·연립)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각 가구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지 않음. 즉 소유자가 1인		각 가구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음. 즉 소유자가 여러명	

3

일반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이란?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된 전원(건전지)으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는 장치(구획된 실마다 설치)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써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消火)에 사용하는 기구(각 세대별·층별로 비치)



4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6층 이상 건축물 등에 자동소화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노유자 시설에 대한 피난기구 설치기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전

- (11층 이상 건축물) 전층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 (연립주택 등의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설치기준 미비
- (노유자시설) 3층 이상 10층 이하 피난기구 설치



변경(2017년 1월)

- (6층 이상 건축물) 전층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 (연립주택 등의 지하주차장) 50세대 이상, 200㎡ 이상인 지하주차장에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
- (노유자시설) 피난층을 제외한 1·2층에도 피난기구 설치 의무화

➤ 앞으로는 화재피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6층 이상 건축물, 연립주택 등의 지하주차장, 노유자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됩니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7.1월)

- (6층 이상 건축물) 화재발생 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18.1월 시행*)

* 국민의 규제순응도 등을 고려, 1년의 유예기간을 둔 후 시행예정

- (연립주택 등의 지하주차장) 50세대 이상, 200㎡ 이상인 지하주차장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 (노유자시설) 피난기구의 설치대상을 현행 3층이상에서 피난층을 제외한 1층, 2층까지 확대하였습니다.

5

소방시설업 창업규제 완화 및 소방공사의 내실화



소방시설업 등록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체만 입찰 시 사전평가제도를 도입합니다.

이전

- 원칙적으로 소방시설업 창업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
- 대형 소방공사의 설계·감리업체 입찰 시 사전심사가 없어 저가 응찰 및 부실시공 우려



변경(2017년 상반기)

- 원칙적으로 소방시설업 창업을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
- 대형 소방공사의 설계·감리 업체에 대한 사업능력 사전 평가 제도 도입('17.1.28)

➤ 앞으로는 소방시설업의 등록 문턱이 낮아져 소방시설업 창업이 쉬워집니다.

-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부응하여 기존의 포지티브 방식(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의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개정('17년 상반기)

- ☞ 원칙적으로 기술인력과 자본금을 갖추면 시설업 등록을 허용
- ☞ 예외적으로 피성년후견인 등 결격사유인 경우에만 등록 불허

➤ 또한, 국가·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대형공사(용역비 2천만원 이상)에 참여하려는 설계·감리업체는 기술수준, 사업실적 등 수행능력을 사전에 평가받은 후, 능력있는 업체에 한해 입찰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개정(2017.1.28시행)

- 소방시설 업종(설계·시공·감리·방염) 중 시공분야에서 시행하던 제도를 설계·감리까지 확대한 것으로, 견실하고 기술력 있는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6

소방차 출동 목표시간 관리제



소방차의 화재현장 도착시간 단축을 위해 신고접수부터 현장 도착까지의 총 소요 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이전

- 소방차 화재현장 도착시간 측정: 차고출발 ~ 현장 도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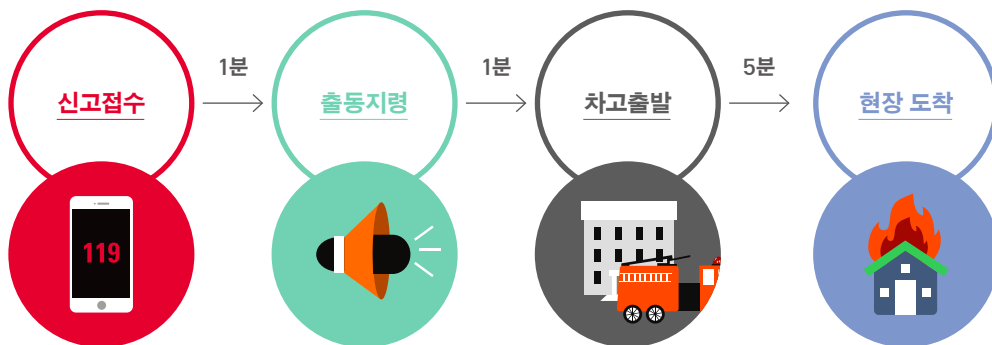
변경 (2017년 1월)

- 소방차 화재현장 도착시간 측정: 신고접수 ~ 현장 도착
- 화재현장 도착 권고시간(7분) 설정

소방차 출동 목표시간 관리제는 화재현장 도착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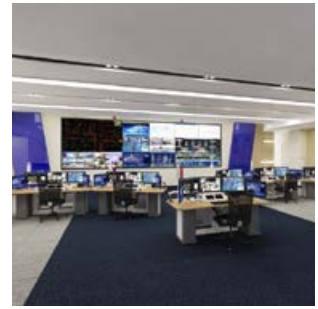
- 종전에는 '차고 출발부터 현장 도착까지'를 측정하였으나,
- '17년부터는 '신고 접수부터 현장 도착까지'의 총 소요 시간을 측정합니다.

또한, 소방차의 화재현장 도착 권고시간을 7분으로 설정하고 신고접수 1분 → 출동지령 1분 → 차고출발 5분 → 현장 도착까지 각 단계별 목표시간을 관리하는 등 현장 도착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신설



국가 차원의 구급상황관리 총괄 조정·지원으로 보다 고품질의 119구급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전

- 시·도 119구급상황의 통합관리 및 **중앙차원의 전담기구 부재**
- 전국단위 광역이송 및 병원간 전원 안내시 **지역적 한계**
- 시·도 **지도의사 부족**으로 365일 24시간 상시 의료지도 공백 발생
- 국가차원의 **재외국민 대상** 응급의료 상담·안내서비스 **부재**



변경(2017년 4월)

- **초광역·국가적** 구급상황에 대한 실시간 총괄 조정·지원
- 광역 구급이송 및 **전국단위 병원간 전원(轉院) 조정업무** 지원
- **중앙차원의 의료지도** 통합관리 및 영상의료지도 제공
- **해상선원 및 해외여행객**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신설하여 시·도 관할을 넘는 국가적 구급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 전국 구급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여 대형재난이 발생할 경우

- 신속하게 인접 시·도의 응급의료자원까지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고,
- 전국단위 병원 간 전원(轉院) 조정업무도 지원하게 됩니다.

➤ 또한 전국 119구급헬기 운항 상황을 통합 관리하여 응급환자를 신속히 이송하고,

- 원양어선 등 해상선원과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응급의료 상담 및 안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고품질의 119구급서비스를 확대·강화하였습니다.

8

대형 재난현장 국가기관 헬기 통합 대응체계 강화

기관별 헬기운항정보시스템과 항공무선통신이 연계되어 대형 재난현장 대응역량이 강화됩니다.



- 대형재난 발생 시 헬기운항정보시스템과 항공무선통신체계를 통합 운영하여,
 - 현장에 출동한 헬기의 실시간 위치와 활동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체계적인 현장대응과 합동작전 수행의 안전성이 강화됩니다.

※ 소방 28대, 해경 17대, 경찰청 19대, 산림청 45대 통합지휘

- 아울러 연계된 국가기관 헬기운항정보시스템을 활용, 공동 작전 수행역량을 강화하고자 2017년 총 4회의 합동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상반기] 육상재난(소방주관), 육상테러(경찰주관),
[하반기] 해상재난(해경주관), 산불재난(산림청주관)

9

소방용품 제품검사 수수료 부담완화



제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생산제품검사 수수료 할인율을 신설하고, 품질제품검사 수수료 할인율을 확대합니다.

이전

- 생산제품검사 수수료
 - 할인율 : 0%
- 품질제품검사 수수료
 - 할인율 : 10~30%



변경(2017년 1월 1일)

- 생산제품검사 수수료 신설
 - 할인율 : 0~50%
- 품질제품검사 수수료 할인율 확대
 - 할인율 : 20~40%

➤ 제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생산제품검사대상 소방용품의 신청수량에 따라 수수료를 최대 50%까지 차등하여 할인해 주고,

※ 신청수량에 따른 수수료 할인율

- 1~1,200개 (0%) / 1,201~3,200개 (10%) / 3,201~10,000개 (20%)
- 10,001~35,000개 (30%) / 35,001~500,000개 (40%) / 500,001개 이상 (50%)

※ 생산제품 검사 : 제품출고 전 제품의 형식·성능 인증기준 부합여부 검사

➤ 품질제품검사대상 소방용품에 대해서는 검사주기에 따라 할인율을 10%씩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 검사주기별 수수료 할인율 확대

- 3개월:10% → 20% / 6월:20% → 30% / 1년:30% → 40%

※ 품질제품 검사 : 제품을 先출고하고, 생산된 제품이 형식·성능인증 기준에 맞는지 주기적으로 검사

2017 국민안전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해양경비안전 분야

- ① 수상구조사 자격제도
- ② 국민편의를 위한 조종면허 PC시험장 증설
- ③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수수료 현실화
- ④ 연안체험활동 신고기관 변경
- ⑤ 연안해역 통화품질 향상
- ⑥ 국내 최초 화학방제정 도입
- ⑦ 해상교통 관제시스템 확대 설치

1

수상구조사 자격제도

수상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자격제도를 새롭게 시행합니다.



이전

- 신설



변경(2017년 3월)

- 2017년 3월부터 **수상구조사** 국가 자격시험 실시
 - 구조영법 등 6개 과목 60점 이상 득점자에게 자격발급

▶▶ 올해 3월부터는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표준화된 교육과 엄격한 평가를 통해 양성된 수상구조사들이 국민의 수상안전을 든든하게 지키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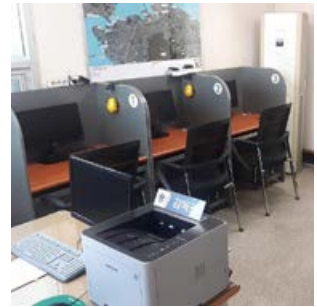
자격 취득 절차

사전교육 신청	○ 자유형 50m, 평형 50m, 잠영 10m 이상 가능자 교육신청
교육 수료	○ 지정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의 교육 실시(이론16h, 실습48h) - 수난사고의 이해, 관련 법령, 구조 기술, 응급처치, 종합구조 등
자격 시험	○ 지정 실기시험장에서 6개 과목 60점 이상자에게 자격부여 - 구조영법,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장비기술
자격증 발급	○ 전국 해양경비안전서에서 자격증 발급
자격 유지	○ 매 2년마다 종합구조 능력을 평가하는 보수교육 실시(8h)



2

국민편의 증대를 위한 조종면허 PC시험장 증설



PC를 이용한 조종면허 필기시험을 확대하여 응시생들의 응시편의를 향상시킵니다.

이전

- 전국 5개 PC시험장 운영중
- ※ 서울, 태안, 동해, 부산, 목포



변경 (2017년 하반기)

- 4개 PC시험장 추가 증설로 총 9개 PC시험장 운영
- ※ 위치 : 포항, 통영, 여수, 평택

- 기존 조종면허 필기시험 시행 월 2회에 불과하여 응시생들의 불편이 많았으나.
 - 하반기부터는 매일 필기시험을 치를 수 있는 PC시험장이 전국적으로 추가 증설되어 시험응시가 편리해집니다.
- PC시험장은 평일 오전 9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며, 주말에도 매일 첫 주 토요일*에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됩니다.
 - * 해당 시험장 : (기존) 서울, 목포, 부산 / (신규) 포항, 통영, 여수, 평택
- 참고로, 사전예약은 불가능하며 현장 접수를 통해 접수 순서대로 시험이 진행됩니다.



서울, 태안, 동해, 부산, 목포



포항, 통영, 여수, 평택

3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수수료 현실화



2006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대행제도 시행 이후 10년간 동결되어온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검사 수수료가 현실화 됩니다.

이전

- 복잡한 신규검사 수수료 체계
- 선체, 기관, 기타수수료 등을 **별도 계상**
- '06년 이후 검사수수료 동결
- 5톤 미만(사업용 2톤 미만) 모터보트,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의 신규·정기검사, 임시검사
- 증서비 및 출장여비(유류비, 운임, 교통비 등)가 낮아 **원가보상 불가**



변경(2017년 상반기)

- 신규검사 수수료 **체계 통합**
- 합산 신규검사 수수료 신설
- 수수료 인상
- 증서비 및 출장여비 **현실화**

➤ 동력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에 대한 검사 수수료는 정부의 안전검사 대행업무 개시('06년) 이후 10년간 동결 증으로, 출장비 및 검사노임 등 원가 보상조차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 동력수상레저기구 검사품질 개선을 위해 상반기 중 통합 수수료 체계 개편, 수수료 현실화 등 증액된 수수료 적용을 시행합니다.

정기검사 수수료(임시검사 수수료) / 단위:원

톤급별	현행			개정(안)		
	모터보트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
~3미만	35,000 (15,000)	35,000 (15,000)	35,000 (15,000)	60,000 (21,900)	51,200 (21,900)	42,400 (21,900)
3이상~5미만	181,200 (68,200)			181,200 (68,200)		
5이상~10미만	248,100 (99,800)	35,000 (15,000)	35,000 (15,000)	248,100 (99,800)	51,200 (21,900)	42,400 (21,900)
10이상~20미만	248,100 (99,800)			248,100 (99,800)		

4

연안체험활동 신고기관 변경



연안체험활동 신고기관이 지자체장에서 해경서장으로 변경됩니다.

이전

- 연안체험활동 **지자체** 신고
- 야간·휴일접수 곤란으로 국민 불편 초래
- 신고는 지자체, 점검은 해경으로 안전관리 **이원화**



변경 (2017년 상반기)

- 연안체험활동 **해경서** 신고
- 연안체험활동사업장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신고가능한 해경서로 변경
- **신고-점검 일원화**를 통해 안전관리 효율성 제고

- 연안체험활동은 주로 휴일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연안체험활동을 지자체에 신고해야함에 따라 휴일 및 야간 신고가 곤란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앞으로는 신고접수와 관리점검 업무를 일원화하고,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신고기관이 지자체에서 해경서장으로 변경됩니다.
- 또한, 신고방식이 방문과 팩스로만 처리되는 것을 개선하고자 상반기중 온라인 신고접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이용자 편의를 증진할 예정입니다.

연안체험활동 신고 절차 개선

- (기존) 연안체험활동 계획신고서 작성 → 시, 군, 구 민원실 신고 → 활동장소 관할 해경서 통보
- (개정) 연안체험활동 계획신고서 작성 → 활동장소 관할 해경서 신고

5

연안해역 통화품질 향상 -휴대폰 커버리지 맵-



연안해역 휴대폰 난청구역 해소로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수색·대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전

- 연안해역 휴대폰 중계기 1,890개소 설치
- 연안해역의 90% 이상 통화권 확보

중계기 미설치 시



변경(2017년)

- 난청지역 재조사* 후 추가 설치
* 휴대폰 커버리지 맵 이용('16.10.31 이동통신 3사 개발완료)
- www.smartchoice.or.kr
- 10% 휴대폰 난청구역 해소

중계기 설치 시 통화권

➤ 바다에서 사고가 났을 때 휴대폰을 통해 신속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민간기업(이동통신 3사) 과 함께 지속적인 음영구역 실사를 통해 휴대폰 중계기 설치사업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휴대폰 중계기 설치현황

구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연안해역 (중계기)	1,890개소	1,500개소	240개소	150개소	난청해역 재조사 후 추가설치
통화권 확보율	100%	50%	75%	90%	91%~

6

국내 최초 화학방제정 도입



해상에서 발생하는 화학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최초 화학방제정을 도입합니다.

이전

- 상화학사고 현장접근 불가로 사고대응에 어려움



변경 (2017년 12월)

- 해상화학사고 현장에 화학방제정을 투입하여 인명 및 사고선 안전확보

➤ 지금까지는 해상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장접근을 통한 사고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 화학방제정을 사고현장에 도입하게 됨으로써 인명구조 조치, 오염방제 및 폭발·화재 방지를 위한 사고선박 예인 등 화학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아울러, 민관이 함께하는 실전같은 훈련을 통해 해상화학사고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화학방제정 도입 계획

- 배치시기 : 울산('17년), 여수('18년), 대산항('19년이후) 각 1척
- 주요제원

총톤수	선속	탑승인원	주요기능 및 특징
450톤	13노트 이상	1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가스 차단을 위한 선내기압 및 가스기밀구조 ○ 사고선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예인기능 ○ 화학·기름사고 대응 방제장비 탑재

7

해양안전 확보를 위한 해상교통관제 시스템 확대 설치



경인해역(덕적도~대청도), 태안해역(태안반도~안면도)에 연안 VTS 시스템을 확대 설치합니다.

이전

- 15개 항만과 3개* 연안해역에 해상교통관제(VTS) 운영
- * 진도, 여수, 통영 연안해역



변경(2017년 12월)

- 15개 항만과 5개* 연안해역에 해상교통관제(VTS) 운영
- * 경인·태안 연안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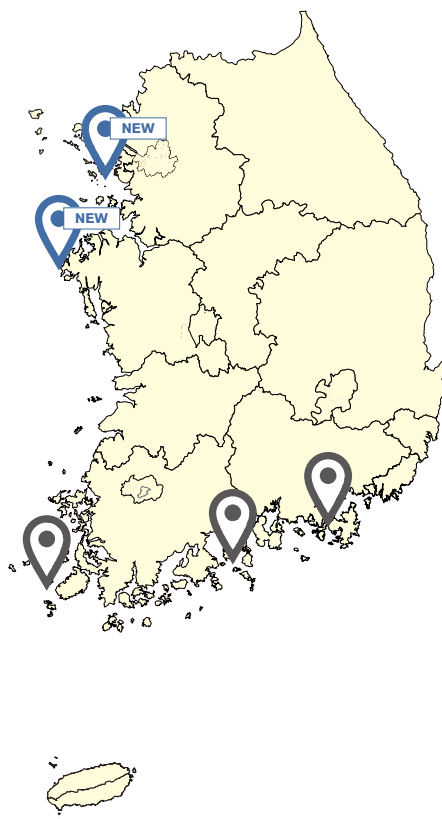
- 2017년에는 선박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VTS가 추가 설치됩니다.
-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은 기존에 15개 항만과 3개 연안해역에서 운영해왔으나, 경인연안과 태안연안에 추가 설치되어 총 15개 항만과 5개 연안해역에서 운영됩니다.
- 그간 경인연안(덕적도~대청도)은 서해5도 여객선, 태안연안(안면도~태안반도)은 위험물 운반선의 사고예방을 위해 VTS 시스템 설치요구가 계속되어 왔던 지역입니다.
 - * (경인연안) 연간 여객선 약 1천회 운항, (태안연안) '07년 유조선 기름오염 사고 발생
- 이에 '17년말 경인연안과 태안연안에 VTS 시스템을 설치한 후 시험운영을 거쳐 '18년 하반기부터 관제서비스를 정식으로 개시할 계획입니다
 - 관제서비스가 개시되면 관제구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선장은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하는 등 VTS 관제에 따라야 하므로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 (관련법령) 해사안전법 제36조(선박교통관제 시행), 선박입출항법 제20조(선박교통관제 운영)

7

해양안전 확보를 위한 해상교통관제 시스템 확대 설치

해상교통관제(Vessel Traffic Services) 시스템

- 해상교통의 안전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선박을 탐지하고 통신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운영하여 선박에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 * 선박 입출항법 제19조(선박교통관제의 시행) 해사안전법 제36조(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



2017 국민안전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민안전처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나성동)
대표전화 044-200-2114 www.mpss.go.kr